



【검토보고서】

2017.10.20(금)
제285회임시회

양주시 리·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양주시의회
Yangju City Council

【전문위원 최상열】

검 토 의 견

1.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양주시장(자치행정과)
- 제출일 : 2017년 10월 10일

2. 제안이유

- 가. 고읍택지개발사업(3단계)에 따라 해당 구역 내 2개의 행정동에 위치한 필지에 대하여 경계조정하여 1개 동으로 편입시키고
- 나.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고읍택지개발 사업지 중 2개 동에 위치한 만송동 일부 지역(23개 필지)에 대하여 광사동으로 편입 (안 별표2)
- 나. 장흥면 삼상1리 3반을 분리하여 별도의 삼상3리 신설
(안 별표1 및 별표2)

4. 기타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
- 나. 예산수반사항 : 3,330천원
(이장수당 : 2,400, 이장상여금 400 이장회의참석수당 : 480, 반장수당 50)
- 다. 입법예고 : 2017. 9. 15.(금) ~ 9. 22.(금)

5. 검토의견

1) 개정안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2에 따라 양주2동 고읍택지지구 사업에 따른 변경된 동 경계 일부를 조정하고, 장흥면 지역의 일부 행정리를 분리하여 새로운 리를 설치함으로써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[지방자치법]

제4조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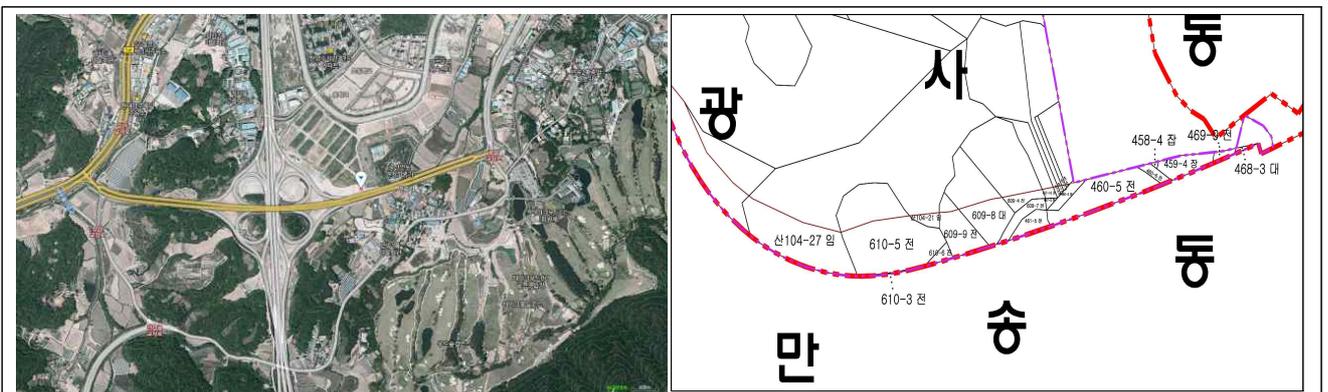
-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2) 주요 개정 내용

가.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(동) 경계 조정(안 별표2)

- 고읍택지지구 개발사업(3단계)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가 행정구역상 2개동에 위치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한 사항임.

- 경계조정 : 만송동 (23개 필지, 3,774㎡) → 광사동(편입)



○ 지번별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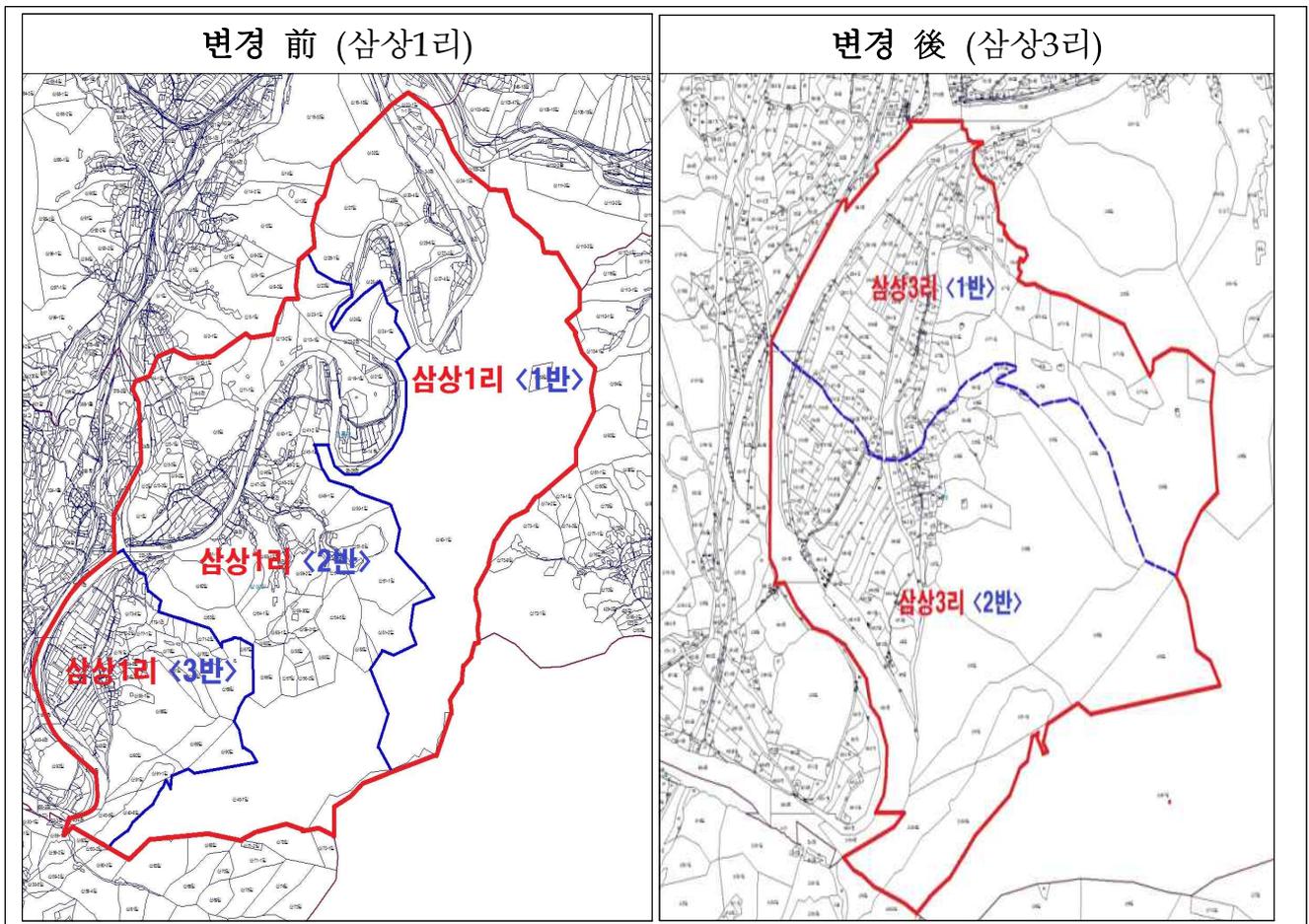
행정구역 명칭 (현행)			지목	총면적 (㎡)	행정구역 명칭 (변경)		비 고
시·군·구	읍·면·동(반)	지번			읍면동(반)	가지번	
계		23개 필지		3,774			
양주시	만송동(1반)	457-10	전	24	광사동(4반)	740	
〃	〃	457-11	전	2		743	
〃	〃	457-5	전	15		745	
〃	〃	457-7	전	6		742	
〃	〃	457-8	전	1		744	
〃	〃	457-9	전	8		741	
〃	〃	458-4	잡	7		749	
〃	〃	459-4	장	192		750	
〃	〃	460-3	전	78		746	
〃	〃	460-5	전	565		747	
〃	〃	460-6	전	57		748	
〃	〃	461-5	전	123		739	
〃	〃	468-3	대	12		752	
〃	〃	469-9	전	35		751	
〃	〃	609-4	전	85		737	
〃	〃	609-7	전	125		738	
〃	〃	609-8	대	300		736	
〃	〃	609-9	전	284		735	
〃	〃	610-3	전	10		733	
〃	〃	610-5	전	907		732	
〃	〃	610-6	전	57		734	
〃	〃	산104-21	임	69		산177	
〃	〃	산104-27	임	812		산176	

나. 장흥면 삼상1리 3반을 분리하여 삼상3리로 리 신설 (안 별표1 및 별표2)

- 장흥면 삼상1리 지역은 하천(곡릉천)을 따라 3개반(232세대, 527명이 거주)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 정자교를 기준으로 1·2반 지역(이곡마을)과 3반 지역(천생연분마을)이 마을회관, 경로당, 부녀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등 지형적 각각 독립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어,
- 지역주민들의 리 분리 요청에 따라 삼상1리 장흥면 삼상1리에서 3반지역(천생연분 마을)을 분리하여 삼상1리(2개반)과 삼상3리(2개반)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※ 행정구역 조정 현황

현 행				개 정 안				관할구역
리·통	반	세대	주민수	리·통	반	세대	주민수	
삼상1리 (분리)	1	17	71	삼상1리	1	17	71	(변동없음)
	2	129	275		2	129	275	(변동없음)
	3	86	181					※ 삼상3리 1·2반 지역
삼상2리		104	230	삼상2리		104	230	(변동없음)
삼상3리 (신설)				삼상3리	1	47	99	179, 200~210, 217~243, 산40-1, 산69, 산78
					2	39	82	187~199, 211~216, 446~450, 산24, 산80, 산90



○ 「양주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리·통·반 설치 기준에 따른 1개 리·통의 반수기준(4개반~30개반)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,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※ 관련법규

[양주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3조(확정기준) ① 리·통·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리·통은 4개반에서 30개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.
2.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의 범위에서 구성한다.

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**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또는 주민의 집단거주실태 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리·통·반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**

- 이를 통해 (현행) 101개리 · 105통 · 2,065반에서 (개정안) 102개리 · 105통 2,066반으로 1리 · 1반이 각각 증가하게 되며, 이 · 통장 및 반장 수당의 재정 수요는 큰 변동이 없음.

※ 예산수반 사항 (연간 총 3,330,000원)

- 이장수당 : 200,000원 × 1명 × 12월 = 2,400,000원
- 이장상여수당 : 200,000원 × 1명 × 2회 = 400,000원
- 회의참석수당 : 20,000원 × 1명 × 2회 × 12월 = 480,000원
- 반장수당 : 50,000원 × 1명 = 50,000원

3)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2에 따라 양주2동 고읍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변화된 동의 경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장흥면 일부 지역의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이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행정리를 분리(신설) 함으로써 읍 · 면 · 동 행정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.